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멀티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멀티에셋국공채법인 MMF 투자신탁제1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에셋국공채법인 MMF 투자신탁제1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멀티에셋국공채법인 MMF 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co.kr 및 멀티에셋자산운용㈜ multiasset.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22. 08. 3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04.1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이 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 약 정 보	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3. 모집예정금액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9
5. 인수에 관한 사항	9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9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0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1
4. 집합투자업자	11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2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3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6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8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8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3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34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8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8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9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9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1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4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4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8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48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9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2.08.31)

멀티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펀드코드 : 86487)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멀티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신용등급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멀티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법인용), 추가형(추가납입가능), 개방형(중도환매가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 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10	0.05	0.17	0.104	10	22	34	60	137
<p>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 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했습니다.</p> <p>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3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2022.08.31 기준입니다.</p>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1.09.01~ '22.08.31	20.09.01~ '22.08.31	19.09.01~ '22.08.31	17.09.01~ '22.08.31					

투자신탁	2008.08.18	1.34	0.98	1.05	1.28	2.06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2008.08.18	0.05	0.06	0.06	0.06	0.13

- 주1)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 등락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현황 (2022.08.31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MF, 단위 : %)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찬곤	1987	팀장 (책임)	5개	15,957억	1.35	-	1.35	1.91	1년 9개월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 없음]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 2팀이 담당합니다.
 -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 부재시 등의 경우 본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6)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계약 제19조제4항에 따른 안정적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의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p>평가)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공채, 특수채 및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 가격변동,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p>(1) 오후 5시 이전 : 자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2) 오후 5시 이후 :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환매방법	<p>(1) 오후 5시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2영업일(T+1)에 환매대금을 지급 <p>(2) 오후 5시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3영업일(T+2)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인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번호 : 02-3774-80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ultiasset.miraeasset.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04.13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한 사항 (34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multiasset.mirae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multiasset.mirae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멀티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864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법인용)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집예정 금액이 줄거나 모집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multiasset.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멀티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864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8.08.18	최초 설정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 →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 [국공채]
2009.10.19	집합투자규약변경(법령개정사항반영)
2010.01.29	집합투자규약 변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변경)
2010.04.2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강은규, 변경 후: 김재정)
2010.11.12	집합투자규약 변경(임의해지 요건 변경)
2012.07.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김재정, 변경 후: 강승구
2012.09.2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강승구, 변경 후: 허승찬
2013.05.2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허승찬, 변경 후: 최진범
2013.11.1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투자운용 비중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등)
2014.07.2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16.01.2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안성호, 변경 후: 강효승
2016.05.04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산은자산운용(주)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투자신탁 명칭 변경 (산은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멀티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 위험등급 변경 : 5등급(매우 낮은 위험)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2017.03.20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타스→미래에셋펀드서비스)
2017.10.23	운용보수 인하 (운용보수 0.045 → 0.035)
2018.01.18	-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인하 - 판매보수 인상 (운용보수 0.035 → 0.030, 수탁보수 0.015 → 0.010, 판매보수 0.040 → 0.050)

2018.11.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진범 운용역 → 이주용 운용역)
2018.12.27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9.12.13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2020.03.20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주용 운용역 → 김동현 운용역)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강효승 운용역) 삭제
2020.09.18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12.22	부책임운용전문인력(박찬곤 운용역) 추가
2021.10.07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고난도상품 해당 여부, 간이투자설명서 보수비용 정보 등)
2022.03.22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동현 운용역 → 박찬곤 운용역)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박찬곤 운용역) 삭제
2022.04.21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 2)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2022.10.13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2023.04.13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장부가평가 MMF의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기재 및 위험고지 등)

주1) 최근 5년동안의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증권빌딩 16층 (대표전화 : 02-3774-8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현황 (2022.08.31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MF, 단위 :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찬곤	1987	팀장 (책임)	5개	15,957억	1.35	-	1.35	1.91	- 운용경력 : 1년 9개월 - (현) 멀티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 KTB투자증권 채권금융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 없음]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 2팀이 담당합니다.
-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 부재시 등의 경우 본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이주용	2018.11 ~ 2020.03
김동현	2020.03 ~ 2022.03
박찬곤	2022.03 ~ 현재

주1) 2022년 08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강효승	2016.01 ~ 2020.03
-	2020.03 ~ 2020.11
박찬곤	2020.11 ~ 2022.03
-	2022.03 ~ 현재

주1) 2022년 08월 기준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법인용), 추가형, 개방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 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및 한도

투자대상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채권등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
③	어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④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매수 하는 경우
⑥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⑦	단기대출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⑧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⑨	주식의 취득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⑩	단기사채 등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및 채무증서 포함)	신용평가 등급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함. -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	--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②동일인 발행한채무증권	<p>-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운용하는 행위.</p> <p>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p> <p>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p> <p>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 분의 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함.</p>

③동일인과의 거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의 합계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는 행위
④환매조건부 매도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⑤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⑥집합투자증권 투자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다른자산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자산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되도록 설계된 자산 - 위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⑧가중평균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60 일을 초과하는 행위
⑨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자산을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자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⑩국채증권	투자신탁자산의 5%를 초과하여 남은 만기가 1 년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⑪채무증권	투자신탁자산의 40%미만으로 채무증권(법 제 4 조 제 3 항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⑫ 다음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자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⑬ 다음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1. 위의 ⑫1.부터 3.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위의 ⑫ 4.에 해당하는 것
3. 위의 ⑫ 5.부터 7.에 해당하는 것

⑭ 다음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단기대출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 등급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p>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③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위의 ⑥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1)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 입니다.

〈운용 전략〉

구 분	내 용
자산운용 기본방침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국공채, 특수채와 우량은행 발행 CD(AAA급) 등의 유동성자산 위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가중평균듀레이션과 개별자산의 최대만기를 약관상의 규정보다 짧게 유지하여 금리변동위험에 대

	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수시입출금을 감안한 유동성을 중점 관리합니다.
	시장 금리상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해지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비교지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특성상 별도 비교지수는 없으나,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 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정책을 수립하며, 성과평가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제한 및 펀드의 잔존만기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 당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MMF의 유동성 제고 및 안정적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환매에 따른 수익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MMF 내 안정적자산 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 방안)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제 1 항의 안정적 자산 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⑥제 5 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 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공채, 특수채 및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 전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4항에 따른 안정적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의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고 **설정기간이 3년 이상 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자위험 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은 6 등급 중 6 등급(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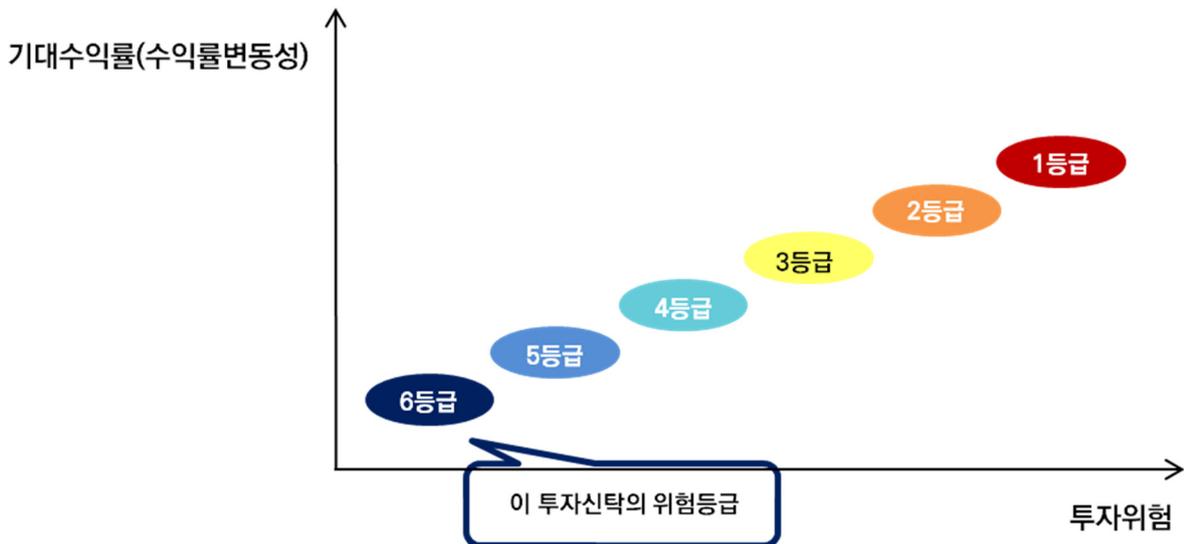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단기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0.056 %

〈멀티에셋자산운용회사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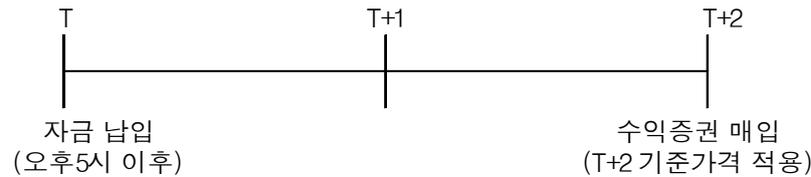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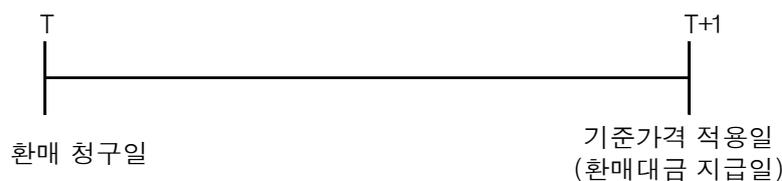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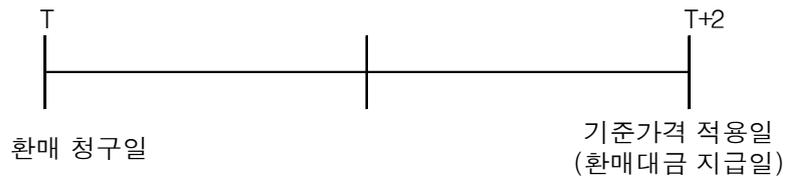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T+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T+2)**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환매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환매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 ①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펀드 환매자금이 MMF 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제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 약정(또는 예약) :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②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 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전약정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 청약·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1)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업무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일 매입·환매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천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③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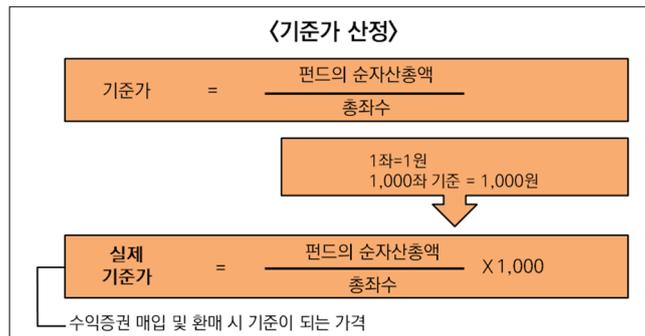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multiasset.miraeasset.com)·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시가평가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시가평가 사유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1) 현금
-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 3) 양도성 예금증서
-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 6)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단기대출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 등급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4) 상기의 장부가가격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5) 장부가격 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선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법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	지급시기
선·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매입·환매시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3	매 1 개월후급 및 투자신탁 전부해지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수	0.05	
신탁업자 보수	0.01	
일반사무관리보수	0.01	
총 보수	0.10	
동종유형 총 보수	0.17	-
기타 비용	0.004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104	-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104	
증권 거래비용	0.006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1.08.18 ~2022.08.17]

※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 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구 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펀드결제수수료(과세)	54,672,550
회계감사비(과세)	6,600,000
자산평가수수료(과세)	46,903,640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1.08.18 ~2022.08.17]

※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증권 등의 자산매매수수료 등

구 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REPO 중개수수료(과세)	134,294,666
콜중개수수료(과세)	20,224,080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 신탁)이 모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 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8) '동종유형 총보수'는 2022.08.31 기준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	22	34	60	1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	22	34	60	137



(피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위(1)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3)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4)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8)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9)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4기(2021.08.18 - 2022.08.17)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3기(2020.08.18 - 2021.08.17)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2기(2019.08.18 - 2020.08.17)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2022.08.17)	(2021.08.17)	(2020.08.17)
운용자산	893,763	3,971,116	2,930,160
증권	503,461	2,504,471	1,692,66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90,301	1,014,744	1,119,391
기타 운용자산	0	451,900	118,100
기타자산	2,690	21,409	50,637
자산총계	896,453	3,992,525	2,980,798
운용부채	23,500	0	0
기타부채	11,563	25,294	36,935
부채총계	35,063	25,294	36,935
원본	861,389	3,967,231	2,943,86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0	0	0
자본총계	861,389	3,967,231	2,943,862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2021.08.18 - 2022.08.17)	(2020.08.18 - 2021.08.17)	(2019.08.18 - 2020.08.17)

운용수익	36,009	25,435	35,803
이자수익	40,349	33,963	39,239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340	-8,528	-3,43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3,063	3,921	2,994
관련회사 보수	2,746	3,540	2,754
매매수수료	256	347	226
기타비용	61	33	13
당기순이익	32,945	21,513	32,809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경우는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항목	14기('22.08.17)	13기('21.08.17)	12기('20.08.17)
운용자산	893,763	3,971,116	2,930,160
증권	503,461	2,504,471	1,692,668
주식	0	0	0
ETF	0	0	0
채권	503,461	1,275,132	1,562,707
매입어음	0	1,229,339	129,961
수익증권	0	0	0
외화유가증권	0	0	0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0
ELS	0	0	0
ELW	0	0	0
DLS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부동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90,301	1,014,744	1,119,391
예금	301	72	58
외화예금	0	0	0
CD	0	224,672	489,333
정기예금	390,000	790,000	630,000
위탁증거금	0	0	0
청약증거금	0	0	0
기타운용자산	0	451,900	118,100
콜론	0	50,000	40,000
환매조건부채권	0	401,900	78,100
기타자산	2,690	21,409	50,637
미수이자	2,690	1,433	694
미수배당금	0	0	0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19,976	49,943
선물정산미수입금	0	0	0
선납(선급)원천세	0	0	0
기타	0	0	0
자산총계	896,453	3,992,525	2,980,798
운용부채	23,500	0	0
매도유가증권	23,500	0	0
미지급주식	0	0	0
미지급채권	0	0	0
미지급ETF	0	0	0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0
기타부채	11,563	25,294	36,935
미지급보수	428	942	766
미지급해지금	0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11,124	24,314	36,146
미지급원천세	0	0	0
기타부채	11	37	22
부채총계	35,063	25,294	36,935
원본	861,389	3,967,231	2,943,862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0	0	0
당기순이익	0	0	0
감자차익/차손	0	0	0
자본총계	861,389	3,967,231	2,943,862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항목	14기('21.08.18~'22.08.17)	13기('20.08.18~'21.08.17)	12기('19.08.18~'20.08.17)
운용수익	36,009	25,435	35,803
투자수익	40,349	33,963	39,240
이자수익	40,349	33,963	39,239
배당수익	0	0	0
기타수익	0	0	0
매매이익	624	126	345
주식매매이익	0	0	0
파생상품매매이익	0	0	0
채권매매이익	574	110	302
외환거래이익	0	0	0
유동자산매매이익	50	15	42
ETF매매이익	0	0	0
수익증권매매이익	0	0	0
기타매매이익	0	0	0
매매손실	4,965	8,654	3,781
주식매매손실	0	0	0
파생상품매매손실	0	0	0
채권매매손실	4,871	8,293	3,186
외환거래손실	0	0	0
유동자산매매손실	93	361	595
ETF매매손실	0	0	0
수익증권매매손실	0	0	0
기타매매손실	0	0	0
운용비용	3,063	3,921	2,994
위탁보수비	823	1,062	826
판매보수비	1,373	1,770	1,377
수탁보수비	274	354	275
사무관리보수비	274	354	275
자문보수비	0	0	0
매매수수료	256	347	226
기타비용	61	33	13
당기순이익	32,945	21,513	32,809
비용	8,029	12,576	6,776
수익	40,974	34,089	39,585
천좌당 순이익(원)	12	6	1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9.08.18~ '20.08.17	26,722	26,722	175,458	176,658	172,741	173,908	29,439	29,472
20.08.18~ '21.08.17	29,439	29,439	280,386	281,315	270,152	271,053	39,672	39,700
21.08.18~ '22.08.17	39,672	39,672	220,332	221,295	251,391	252,571	8,614	8,39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09.01~ '22.08.31	20.09.01~ '22.08.31	19.09.01~ '22.08.31	17.09.01~ '22.08.31	
투자신탁	1.34	0.98	1.05	1.28	2.06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0.05	0.06	0.06	0.06	0.13

주1)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수익률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 등락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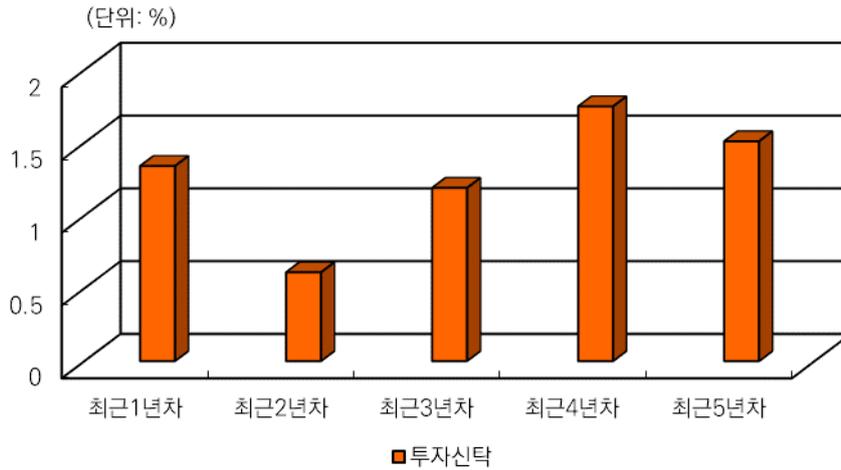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09.01~ '22.08.31	20.09.01~ '21.08.31	19.09.01~ '20.08.31	18.09.01~ '19.08.31	17.09.01~ '18.08.31
투자신탁	1.34	0.61	1.19	1.75	1.51

주1)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3) 상기 수익률은 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22.08.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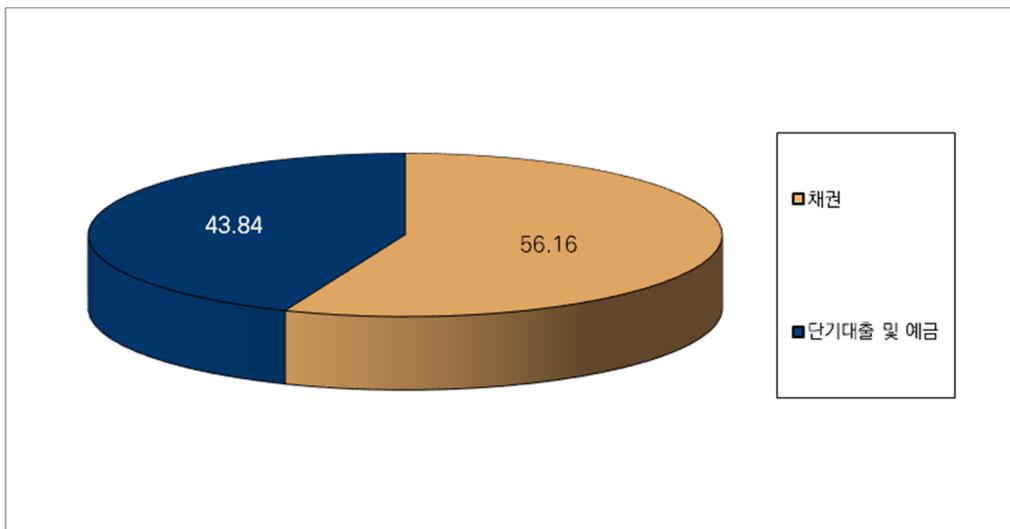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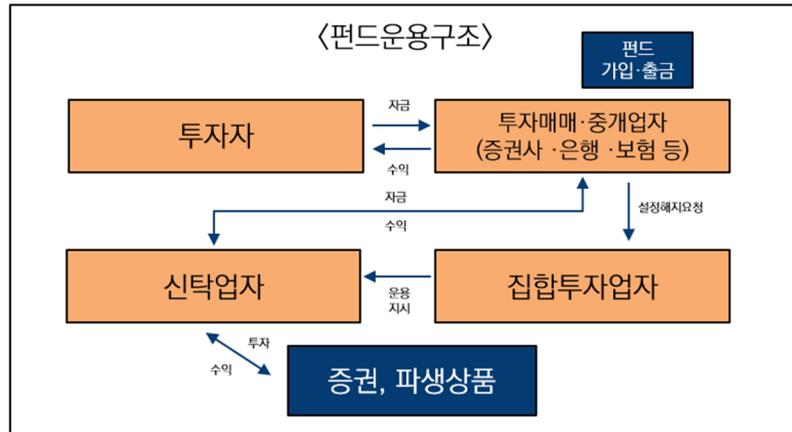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2.08.17 기준, 백만원, %)

통화구분('22.08.17)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대한민국 원)	0	503,462	0	0	0	0	0	0	0	392,992	0	896,453
	0.00	56.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3.84	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multiasset.miraeasset.com)
회사 연혁	1996. 5 회사설립(서울투자신탁운용) 1997. 5 투자자문업등록, 투자일임업허가 1998.12 자산운용회사등록 2000.06 증자(최대주주 대우증권 변경) 2004.05 증자(최대주주 산업은행 변경) 2004.07 산은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6.04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89 억원
주요주주현황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익자명부 작성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21.12.31	'20.12.31	항 목	'21.1.1~ '21.12.31	'20.1.1~ '20.12.31
1. 현금및예치금	31,256	32,793	1. 영업수익	27,991	31,006
2. 증권	40,268	30,988	2. 영업비용	21,305	19,066
3. 대출채권	791	1,234	3. 영업이익	6,685	11,940
6. 유형자산	1,040	1,018	4. 영업외수익	755	268
7. 무형자산	3,855	3,828	5. 영업외비용	81	81
8. 기타자산	8,812	9,542	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7,360	12,128
9. 당기법인세자산	-	-	7. 법인세비용	1,839	3,081
10. 이연법인세자산	-	-			
자산총계	<u>86,024</u>	<u>79,405</u>	당기순이익	<u>5,520</u>	<u>9,046</u>
1. 퇴직급여부채	-	-			
2. 총당부채	799	799			
3. 당기법인세부채	1,148	480			
4. 기타부채	5,344	5,216			
5. 이연법인세부채	1,659	1,356			
부채총계	<u>8,951</u>	<u>7,852</u>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8.31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3,691	2,810	1,069	10,522	792	15,898	944	10,347	28,310	161	74,54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02-3770-88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1955년 10월 11일 설립 1962년 7월 현재 회사명으로 사명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우)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44층 ☎ 02-769-78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1998년 11월 (주)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사명변경(미래에셋펀드서비스 → 한국펀드파트너스) fs.mirae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FN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4층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의해지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신탁 원본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임의해지할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되고 임의해지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가능하다고 통지합니다. 임의해지일 이전에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을 시장에서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시키며, 해지일 당일에 투자자의 수익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및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지점,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상기 2 호 및 6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 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는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 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집합투자규약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⑥제 4 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투자신탁 설정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multiasset.miraeasse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상기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

- 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선정절차 -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중개회사를 선정한다. - 선정된 중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
	③중개회사의 평가 - 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 중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결과는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이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 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자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